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0.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28호로 2023년 10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고질적인 반복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피로도·
사기 저하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질·반복 민원의 처리에 대한 지원사항 신설(안 제12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반영 예정(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8. 31. ~ 9. 20./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피로도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고질·반복민원 처리에 대한 지원)**에서 고질·반복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을 통한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검토 결과

- 반복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¹⁾의 규정에 근거하여,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로 정의 내릴 수 있음.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우리 구의 최근 3년간 고질·반복 민원은 총 578건으로 최근 1년간 280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30%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3년간 접수된 전체민원 건수인 11,492건의 5%를 차지하는 수치임.

□ 영등포구 고질·반복 민원 현황(최근 3년)

연 도	총 계	분 야				
		건축·주택	도로·교통	보건·복지	일반·행정	기타
'20. 7. ~ '21. 6.	176건	111건	5건	14건	27건	19건
'21. 7. ~ '22. 6.	122건	73건	16건	4건	8건	21건
'22. 7. ~ '23. 6.	280건	173건	30건	19건	28건	30건

-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은 업무 담당자에게 직무 스트레스를 가중하여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저해하며 다수의 구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양질의 민원 서비스가 특히 민원관리에 과다 편중되게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의 피해로 돌아감. 또한, 반복적이고 폭언과 물리적 위협 등을 동반한 악성 민원은 젊은 직원들이 공직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영등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를 2021년에 제정한 바 있으며,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2022년 일부개정을 통해 폭언·폭행·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하지만 위 법령들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본 개정조례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규정들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본 개정을 통해 다수의 구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삭제 <2022. 1. 11.>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1.>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0.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29호로 2023년 10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안 제4조)

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10조)

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청렴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3. 8. 31. ~ 9. 20./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우리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등의 임직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으로 정의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 구청장에게 공직자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 **안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에서 공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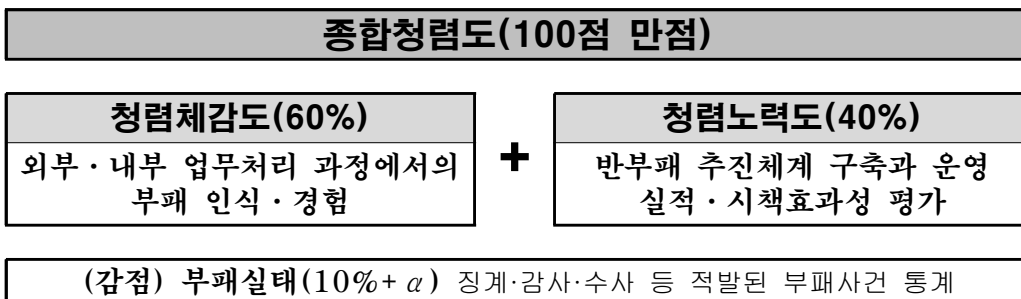
의무 및 부패·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명시함.

-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사업시행 등)**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교육·홍보 및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안 제8조(예산지원)**에서는 안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청렴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구민에 대해서는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함.

○ 검토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적용하였는데, 산정방식은 ‘청렴체감도’ 60%와 ‘청렴노력도’를 40% 비중으로 하여 합산하고 ‘부패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종합청렴도 점수 (100점 만점)를 산정함.

□ 종합청렴도 산정 방식



※ 청렴체감도는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 등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와 내부 구성원인 공직자 등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로 구분됨

- 새로운 평가체계에 근거하여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올해 초 발표하였는데,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46개),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6개), 교육청(17개)등의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95개)등 총 50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으로,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평균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가 76.6점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구 분	종합청렴도(점)	청렴체감도(점)	청렴노력도(점)
전체기관	81.2	82.1	82.2
중앙행정기관	83.6	83.2	87.0
광역자치단체	81.1	80.2	87.6
기초자치단체	76.6	79.0	75.9
교육청	83.9	80.3	91.5
공직유관단체	85.7	85.6	87.1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표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전체기관(501)	28개 (5.6%)	139개 (27.7%)	194개 (38.7%)	124개 (24.8%)	16개 (3.2%)
중앙행정기관(46)	4개 (8.7%)	12개 (26.1%)	14개 (30.4%)	16개 (34.8%)	0개 (0.0%)
광역자치단체(17)	0개 (0.0%)	5개 (29.4%)	9개 (52.9%)	2개 (11.8%)	1개 (5.9%)
기초자치단체(226)	15개 (6.6%)	56개 (24.8%)	91개 (40.3%)	50개 (22.1%)	14개 (6.2%)
교육청(17)	1개 (5.9%)	4개 (23.5%)	7개 (41.2%)	5개 (29.4%)	0개 (0.0%)
공직유관단체(195)	8개 (4.1%)	62개 (31.8%)	73개 (37.4%)	51개 (26.2%)	1개 (0.5%)

※ 영등포구는 종합청렴도 결과, 2등급으로 평가받음.

- 한편, 해당 결과에서 시책효과성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구성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의미하는 ‘청렴 노력도’가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면 구성원이 그 효과성을 인지하게 되고 청렴체감도, 나아가 종합청렴도까지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기관유형별 시책효과성 평가결과

구 분	내부 체감도	시책 효과성					
			반부패 계획	기관장 노력	청렴 교육	이해충돌 방지	신고자 보호
전체기관	62.6	69.5	72.0	70.2	70.8	69.9	64.6
중앙행정기관	65.2	68.2	70.7	69.8	68.7	68.4	63.2
광역자치단체	64.1	71.4	73.8	72.8	72.2	71.2	67.1
기초자치단체	58.5	67.2	69.6	68.1	68.8	67.1	62.3
교육청	68.6	76.1	79.0	77.5	77.3	75.6	70.9
공직유관단체	66.0	71.8	74.4	71.8	72.9	72.9	66.9

- 본 안건은 영등포구 및 산하 기관 소속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등포구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청렴도 결과 등을 반영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청렴도 평가 및 향상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방공무원법」 제53조는 공무원에 대한 청렴의 의무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를 통해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일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체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